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안 번호	24-138
----------	--------

발의년월일: 2024. 10. .

발의자: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최은하

1. 개정 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 완화 및 추가하여 규정(안 제3조)

3. 관계법령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조

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10. 24. ~ 10. 30.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u>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2. ----- ----- ----- ----- <u>피해발생일로부터 1년</u> ----- ----- -----.
<신 설>	<u>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u>

<신 설>

13. (생 략)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
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 및 신설 항목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 예측할 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김상희
연 락 처	02-3153-8837